화평법 및 화관법 주요 내용

- 환경부 자료 제공 -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을 공 포하고 지난 달부터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두 법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학물질의 생산 · 유통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화평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 ·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신청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제조 · 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일 경우 등록 신청 제출 자료를 정식 등록 9개보다 적은 4개로 간소화하고 등록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줄였다. 또 유해물질 함유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 제품 15종을 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 ·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품목은 세정제 · 합성세제 · 표백제 · 섬유유연제 · 코팅제 · 접착제 · 방향제 · 탈취제 · 방청제(금속부식 방지제) · 김서림방지제 · 물체염탈색체 · 문신용염료 · 소독제 · 방충제 · 방부제 등이다.

화관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때 공통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취급시설의 설치 · 관리기준도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외 영향평가는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과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행정처분은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 개선명령 · 영업정지 · 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두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요 문의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도우고자 했다.

- 편집자 주 -

I.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을 관리하는 법으로,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및 심사·평가부분과 제품 내 함유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신고 및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주수로 나뉘어져 있다.

1 제정 배경

화평법은 미지의 화학물질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전세계적으로 8천8백만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12만종의 화학 물질이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 으며, 국내에서는 약 4만여종 물질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체계는 다양한 화학물질의 정확한 용도 및 노출형태에 따른 건강상 의 위협을 관리하기 곤란했기 때문에, 화평법에서는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등록 · 심사 · 평가토록 하 여 국가 내 물질 정보의 생산 · 공유 · 확산을 통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화평법의 제정에 한 몫을 했다.

원인물질(PHMG, PGH 등)이 유해성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슴기 살균제 용도로 사용

[표 1] 화평법 체계도

	무저 저이 저으버이 그가 드이 됐다
제1조~제7조	-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가 등의 책무
	- 화학물질의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8조~제17조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 화학물질의 등록/등록면제, 변경등록/변경신고 등
	-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제출 자료 및 방법
	-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등
	-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평가 등
제18조~제24조	- 유독물질의 지정,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 위해성평가
T 00-T	- 허가물질의 지정 및 해제 등
세25소~세28소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및 해제 등
제29조~제31조	- 화학물질 정보제공
	-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제32조~제37조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 제품의 위해성평가, 안전기준 · 표시기준 등
	-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정보제공,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
제38조~제48조	- 국외 제조 · 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 운영
	- 녹색화학센터 지정 · 운영
	- 보고와 검사, 서류의 기록 및 보존,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49조~제54조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제8조~제17조 제18조~제24조 제25조~제28조 제29조~제31조 제32조~제37조

함으로써 다수 국민의 폐손상 유발사고가 발생되었으며, 시장에 유통되는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화학제품에 대한 잠재적 위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화학물질 등록 · 평가체계의 선진화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07.6월, EU REACH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0.4월 일본의 「화학물질 신고 및 심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10.10월 중국 "신화학물질관리제도"가 시행되었다.

국제 화학물질 교역시장에서는 'No Data, No Market(화학물질의 유해정보 없이는 시장출시 금지)' 원칙이 확립되어 감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화학물질규제 대응력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화평법 시행으로 환경부는 물질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화학산업으로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고 있으며 친환경물질 新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등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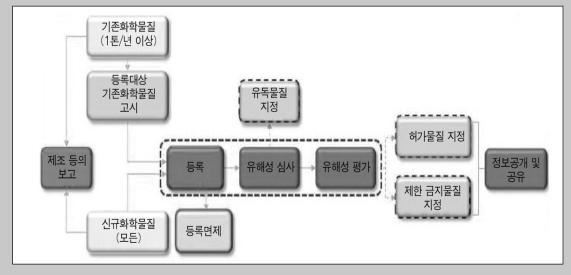
2. 구성 체계

화평법은 총 8장 5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평법은 크게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제도와 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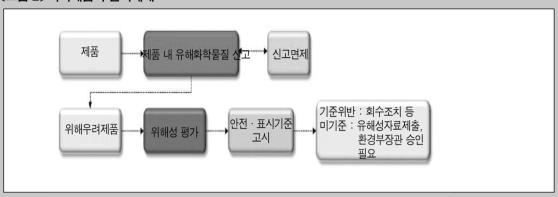
(화학물질) 화학물질 보고 등록 \rightarrow 유해성 위해성에 관한 심사 \cdot 평가 \rightarrow 유해화학물질 지정 \rightarrow 정보공개 및 정보제공으로 구성

(그림 1) 화학물질의 관리체계



(화학제품)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 위해우려제품 지정 → 제품 위해성평가 → 안전 표시기 준 설정 → 사후관리로 구성

[그림 2] 화학제품의 관리체계



3. 주요 문의 내용

Q 혼합물의 경우 그 물질들을 개별로 등록하는 건가요?

A 등록의 기준은 화학물질입니다. 따라서, 만약 혼합물을 제조·수입한다면, 혼합물 내에 구성된 화학물질별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물질(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 0.3%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을 1,000톤을 수입한다면, a화학물질의 수입량(1,000톤×0.3%=3톤)이 1톤 이상이므로 a화학물질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Q 화학물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업체는 등록의무가 있나요?

A 국내 제조사로부터 해당 화학물질을 구매하여 단순 혼합만 하는 경우 화평법 제2조 제17항에 따른 하위사용자에 해당되므로 등록의 의무가 없습니다.

Q 국외제조자가 성분내역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 수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등록의무자는 화학물질의 국내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가 국내 수입자와의 관계에서 영업비밀이 노출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화평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에서 국내 일정한 자를 선임하여 국내 수입자를 갈음하여 등록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Q 불순물, 부산물도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 내 함유되어 있는 물질이 화평법에 따른 불순물·부산물에 해당하면 별도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등록신청서에 확인된 불순물·부산물의 명칭과 함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Q 등록면제 대상에 모든 전자제품이 제외되는 건가요?

A 화평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 · 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과정에서 유출되는 화학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등록시 외국시험기관에서 생산한 시험자료를 사용가능한가요?

A 외국에서 생산된 유해성자료를 등록신청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험기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여러 단계를 걸쳐 원료 의약품을 합성할 때 출발물질들이 화평법(연간 사용량이 1톤 이상) 대상인지요?

A 출발물질들 자체가 약사법에 따라 관리되면 화평법 제3조에 따라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만, 화평법에 따른 중간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평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평법에서는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중간체로 정의하고,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 · 분리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리중간체와 비분리 중간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Q A 수입사 ? B 대리점 ? C 화학회사(원료로 사용)로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경우, A수입사, B대리점은 보고의 의무가 있나요?

A 화학물질 수입자(A)는 화학물질 수입하는 자로서 보고를 하면 되므로 판매하는 자로서 보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안에 따라 판매량은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자란 해당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B대리점은 판매하는 자에 해당되어 '해당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자인 C화학회사'에 판매한 양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Q MSDS를 사용해서 정보전달을 해도 되나요?

A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한 자가 해당 화학물질 및 그 혼합물을 양도하려면 등록

된 내용이 포함된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ㆍ제공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등록된 내용을 MSDS에 기록하고 화평법에 따른 위해성정보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Q 유해법상 유해성심사면제 결과통지서를 공유받았는데, 화평법에서도 인정이 되나요?

A 유해법 시행 당시의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환경부예규]"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를 공유한 자 역시 화평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화평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화평법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을 당시의 사실관계가 화평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II.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운 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한 유해 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 사고대비물질 관리강화, 화학사고의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 현장조정관 파견 등 화학사고의 대비·대응으로 나뉘어져 있다.

1. 목적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데 있으며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

2. 주요 구성

-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한 유해 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 강화
- 사고대비물질 관리 강화, 화학사고의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 부여 및 현장조정관 파견 등 화학사고의 대비·대응

[표 2] 사업장의 주요 의무사항

				-11			
		시	업 양태	-			
구분	제	수	판	사	보	이행 의무	시기
	조	입	매	용	관		
장외 영향 평가	0	Х	X	0	0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운영자 · 평가서 제출 및 결과에 따른 시설 보완 * 위험도 확인 ↔ 보완 · 조정	· 기존시설: ' 19년 12월 말까지 단계별 시행 · 신규시설: ' 15.1.1~ (착공 30일 전)
시설 관리	0	Х	0	0	0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운영자 · 시설 배치, 설치, 관리기준 준수	' 19년 12월말까지 개선
사고 대응	0	X	0	0	0	· 모든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운영자 · 화학사고 시 조치 의무 * 즉시 신고,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조치	'15.1.1~

화관법은 총 6장 6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화관법 체계도

제1장 총 칙		제1조~제8조	-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가 등의 책무
		1111111011	-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화학물질 관리위원회 등
			- 화학물질 확인
제2장 화학물질의		제9조	-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 0	~제12조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 유해화학물질의 진열 · 보관량 제한 등
		제13조	-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제1절 유해화학물질	~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 수입 등의 중지 등
	취급기준 등	제22조	-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제3장 유해화학물질			- 허가물질의 제조 · 수입 · 사용 · 허가 등
의 안전관리			-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 제출
	제2절 유해화학물질	제23조	- 취급시설의 배치 · 설치 및 관리기준
	취급시설의 설치 · 운영 등	~ 제25조	-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 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제1절 유해화학물질	제27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제30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면제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4장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유해성 화학물질 영업자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제2절 유해화학물질	제31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8조	-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취고 등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권리·의무의 승계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공활동 승인 등
	제1절 사고대비	제39조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세기설 사고네미 물질의 지정 등	~	-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 제출
	E E - 1 1 1 0 0	제42조	-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5장 화학사고의			-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대비 및 내용 등	제2절 화학사고의	제43조	- 화학사고 현장 대응
		~	- 화학사고 영향조사
	7100	제47조	- 조치명령 등
			-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보고 및 검사 등
			- 서류의 기록 · 보존
			- 청문
		제48조	- 자료의 보호
제6	장 보칙	~	-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제64조	- 수수료
			- 권한의 위임·위탁
			- 범칙 적용에 시의 공무원 의제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3. 주요 문의

Q 유해화학물질 저장소에 유해화학물질 표지판을 제작하려는데 유해화학물질 표시규격은 있는데 "유해화학물질 목록 표시" 규격은 따로 없나요?

A 화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별표 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방법 '에 수량에 대한 부분은 삭제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 표시 '글자' 크기에 대해서 'a=50cm 이상, b=(3/2)a, c=(1/4)a,

d=(1/4)a'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 목록 표시 '표(표지판)'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던 유독물 표지는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별표 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방법 '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하신 후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 진열·보관 장소의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의 표시를 한 자는 화관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충족하시면 됩니다.

Q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한 자격조건 중 현재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되어있는 인력이 '15년부터 시행 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32시간)을 이수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로 임명할 수 있나요?

A 화관법 부칙 제7조 및 시행규칙안 제8조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15.1.1)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관리자, 취급제한 · 금지물질관리자를 임명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화관법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화관법 제33조에 따라 필요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이 기간 내에 이수하시면 됩니다.

Q 올해 유독물 관리자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차기(次期) 교육은 언제 수강하여야 하나요?

A 화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는 시행규칙(안) 제35조 제1항의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매 2년마다 16시간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 유해법에 따라 올해 유독물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신 경우라 하더라도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교육 내용이 기존 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과 상이하므로 2015년에 새로 교육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교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향후 관련 지침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당사는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이 연간 100톤 이하로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면제되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도 대부분 기업연구소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실험실(분석실)은 취급시설로 판단하지 않으나, 현장 상황에 따른 취급시설 여부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화관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Q 방지턱 설치시 실외 시설의 바닥 둘레 전체면(4면)에 설치하여야 하나요?

A 화관법 시행규칙안 제21조 제2항 별표 5 제1호 가목 11)의 방지턱은 전체 바닥면에 설치하셔야합니다. 하역기계의 진입로 및 이동지역 등은 완충면 혹은 경사면을 두어 하역작업에 지장이 없도록하시되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시면 됩니다.

Q 화관법에 따르면 위해관리계획서를 사업장 주변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데 고지방법 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법에서 정한 고지방법으로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이 있습니다.

[참고] 시행규칙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 ③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고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개별사업장 또는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고지할 수 있다.
 - 1. 서면통지는 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 2. 개별설명 후에는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 3. 집합전달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Q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기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이 있는지요?

A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1\sim4.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일 것

Q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화관법상 기술인력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6]에 의하며,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시행규칙 [별표 6]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3항 관련) 2. 기술인력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산업위생관리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
- 2) 산업안전·기계·화공·위험물·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산업안전·가스?산업위생관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 법 제32조. 영 제12조 및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Q 법령상 모든 규정이 '15년 1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요? 별도의 유예기간이 있나요?

A 화관법에서는 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기한, 유해화학물 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적용 등 법령 취지, 사업체의 규모와 특성별로 최대 3~5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Q 당사는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업체입니다. 제품 생산 공정 중 유독물을 취급하는 공정의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언제 해야 하는지요?

A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한 사업자에게 유독물 취급을 위탁하는 경우는 화관법상 도급(하도급 포함)으로 보지 않아 도급신고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게 하는 것은 화관법상 도급에 해당이 되어 도급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는 도급을 위탁한 원청업체가 도급을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및 시행규칙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

KOPA NEWS 신청

(사) 한국포장협회에서는 매월 15일 온라인 뉴스레터 'KOPA NEWS' 를 제작, 발송합니다. 신청은 이메일로 해주시면됩니다.

> 편집실: (02)2026-8655~9 E-mail: kopac@chollian.net